

의안 번호	976
----------	-----

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3. 4. 3.(수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3. 4. 4.(목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3. 4. 11.(목)

2. 개정이유
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과 상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함
(안 제7조제1호, 안 제7조제3호)
- 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

4. 근거법령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.